

## ■ 최신 판례 ■

### [조세]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나

박용대 변호사 | 김희석 변호사

#### 1. 판결의 취지

- 가. 조세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35조제1항, 구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등은 그 공익목적에 중시하여 조세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여기서까지 조세우선권을 강하게 관철하려다 보면 회생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 나. 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회생법 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3. 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제1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하고(제156조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아울러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제131조 본문) 회생계획에서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제140조).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조세채권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제179조 각호).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제180조제1항)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80조제2항).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조세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개별 세법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해 둔 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성립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와 큰 차이가 없어 예외를 둔 취지가 상실되고, 지정납부기한(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지정하는 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처리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